

의안번호	제 236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10월 일 (제304회)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
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희수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1년 10월 11일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수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1년 10월 11일

발 의 자 : 김희수 · 김봉희 · 정 현 · 김종필 ·
박문희 · 윤성옥 · 황규철 의원(7명)

의안 번호	236
----------	-----

1. 제안 이유

- 우리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을 개발·공급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행정기구(조직)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8조)

3. 조례안 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입

5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 작물연구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
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원예생명연구과장”을 “작물연구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험연구부장”을 “연구개발부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간사는 농업기술원 <u>원예생명연구과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<u>시험연구부장</u>, 기술지원부장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u>작물연구과장</u>-----.</p> <p>④ ----- <u>연구개발부장</u>,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